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7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배준영 · 김용태 · 김미애
김성원 · 김소희 · 송석준
우재준 · 한지아 · 김승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

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이라 한다)을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시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기준 및 방법,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이라 한다)을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시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u>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기준 및 방법,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